

「운영규정 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발췌」

제1조(계약 기간)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,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. 다만,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 확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 것으로 본다.

④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.

제2조(계약의 목적) 본 계약은 센터와 수급자(이용자 및 보호자)가 대등한 입장에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, 상호 간의 책임과 권리·의무 관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·행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, 수급자에게 원활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에 관한 사항은 장기 요양급여 수가 기준을 따른다. 다만 기타 비용은 가족의 동의를 얻어 협의 하에 수납한다.

① 급여비용은 급여 유형별 건강보험공단의 해당연도 수가표를 따르며 본인부담금은 일반은 15%, 경감 9%, 경감 6%, 수급권자는 발생하지 않는다.

② 비급여 항목은 급식비, 간식비, 이·미용 서비스비, 문화생활비, 원거리 교통비 중 급식비와 간식비만을 비용 처리하여 수납한다. 비급여의 산정은 기관의 사정과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사전에 고지한다.

제4조(계약 해지)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,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15일 전에는 구두로 센터에 전달해야 한다.

② 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경우
2.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
3. 장기요양급여 비용 납부를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
4.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

5. 이용자가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
6. 기타 본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

제5조(급여 계약 등) ① 수급자가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.

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‘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’ (이하 “계약” 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
③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,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,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 계약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.

1. 계약 당사자
2. 계약 기간
3. 장기요양급여의 종류, 내용 및 비용 등
4.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

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, 장기요양등급,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,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본인부담금 감경 여부 등을 확인한다.

제6조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권리) ① 신원인수인(이하 ‘보호자’ 라 한다)은 수급자(이하 ‘이용자’ 라 한다)가 존중받으며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.

1. 급여제공 요구권: 표준약관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, 식사, 생활상담 및 편익 제공을 요구할 권리
2. 알 권리: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욕구사정, 서비스 제공 과정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을 권리
3. 계약해지의 권리: 보호자 및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

②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보호자는 제1항의 권리 외에 다음 각 호의 권리를 추가로 가진다.

1. 수급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 및 전원을 결정할 권리
2.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
3. 이용자가 청결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, 필요한 경우 이용자의 생활공간 확인을 요청할 권리

제7조(신원인수인(보호자)의 의무) ① 보호자는 원활한 급여 제공과 기관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정보제공 의무: 이용자의 건강 및 병적 상태, 복용 약물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
 2. 비용부담 의무: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포함하여 매월 발생하는 이용 비용을 약정한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
 3. 변경사항 통보 의무: 보호자 및 이용자의 연락처, 주소,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센터에 통보할 의무
 4. 대리인 지정 의무: 장기 출장, 입원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, 대리인을 선정하여 센터에 통보할 의무
- ② 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, 보호자는 제1항의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추가로 가진다.
1. 이용자의 귀책사유(또는 보호자의 고의·과실)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, 비품 및 집기 등의 오손·파손·멸실에 대하여 원상회복하거나 배상할 의무